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

제정 2005. 9. 21 규칙 제320호
개정 2008. 1. 10 규칙 제367호
일부개정 2012. 3. 9 규칙 제459호
일부개정 2015. 9. 25 규칙 제567호
일부개정 2017. 12. 28 규칙 제616호
전부개정 2019. 12. 13 규칙 제662호
일부개정 2021. 9. 28 규칙 제712호
일부개정 2022. 12. 21 규칙 제742호
일부개정 2023. 12. 13 규칙 제763호
일부개정 2024. 7. 1 규칙 제775호
일부개정 2025. 11. 7 규칙 제8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 및 단원의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소프트 테니스선수단, 배드민턴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두고, 각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8명 이내로 한다. 다만, 지도자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1. 9. 28]

[전문개정 2023. 12. 13]

제3조(인사기록) ① 이천시청(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경기지도실적증명서, 경기지도자자격증 사본 각각 1부
4.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6. 채용 신체검사서 1부
7. 지원서 및 이적동의서 1부
8. 반명함판 사진 4매

제5조(서약) 시장과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단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인사기록부 등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단원의 등급) 단원의 신규임용 시에는 별표 1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2·12·21]

제2장 보수

제8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7>

1. “보수”는 연봉과 그 밖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은 단원에게 지급하는 연간 급여로서 수당, 퇴직금, 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수당”은 훈련수당, 직책수당, 정액급식비, 국가대표선발수당으로 직무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봉월액”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단원의 연봉) ①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등급에 따른 단원의 연봉 기준표는 별표 2와 같다.

② 기존 단원(다년계약자 포함)의 연봉은 매년 12월에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1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별표 2의2에 따라 평가한 후 직전 연봉액을 기준으로 별표 2의3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부상 또는 재활 등으로 평가 대상기간 동안의 성적이 없을 시에는 부상 또는 재활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역산하여 1년간의 실적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③ 단원의 평가 등급은 S급, A급, B급, C급, D급으로 하고, 평가 등급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

1. S급 : 90점 이상
2. A급 : 75점 이상 90점 미만
3. B급 : 50점 이상 75점 미만
4. C급 : 40점 이상 50점 미만
5. D급 : 40점 미만

[전문개정 2022·12·21]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1. 삭제 <2025·11·7>
2. 훈련수당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지급하며, 감독 및 코치는 월 300,000원, 선수는 월 250,000원을 지급한다.
3. 직책수당으로 감독은 월 400,000원, 코치는 월 200,000원, 주장은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4. 단원 모두에게 정액급식비로 월 140,000원을 지급한다.
5.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게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가 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제11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준용한다.

제12조(요양보상)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상해보험 지급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제3장 복무

제13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기타 :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과 각종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휴가 및 특별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③ 공가 및 특별휴가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연간 훈련계획) 지도자는 연간 훈련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수립하여 전월 20일

까지 보고하고, 매일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일지를 기록 정리한다.

제17조(훈련 등) ① 시장은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강화훈련, 특별훈련 및 전지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훈련을 허가할 수 있으며, 훈련기간은 연간 40일 이내로 한다.

② 지도자는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 최소 7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훈련 계획서를 제출하고, 훈련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훈련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훈련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훈련비의 지급) 제17조에 따라 훈련을 할 경우 별표 3과 같이 단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한다.

제19조(대회출전 및 계획서) ① 지도자는 대회참가 신청 전 별지 9호서식에 따른 출전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대회에 참가하고, 대회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10호서식에 따른 대회 참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대회 참가는 개막 3일 이내부터 대회기간 동안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제20조(대회출전비) 단원이 대회에 출전 시 별표3과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12·13>

제21조(피복비 등) ①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별표 4와 같이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경기규칙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지도자는 제1항에 따라 피복, 운동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장비(피복·물품)구매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우수선수 영입비) ① 시장은 선수단의 전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방식 또는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12·21, 2025·11·7>

② 우수선수의 영입비는 별표 1에 따른 해당 우수선수의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 등급별 연봉표에 따라 산정한 연봉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S급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2022·12·21>

③ 제2항에 따른 우수선수의 영입비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이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2·12·21, 단서삭제 2025·11·7>

④ 직장운동경기부선수로서 이천시와 계약이 만료되어 재임용을 할 경우 우수선수에 대하여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입비는 별표 2의 단원 평가에 따라 산정된 연봉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1·7>

⑤ 영입비를 받고 계약기간을 설정한 선수가 계약기간 내에 다른 선수단으로 이적시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2025·11·7>

⑥ 선수가 제3항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의 배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천시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에 대해서 반환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부상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입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1, 2025·11·7>

[제목개정 2021·9·28]

제23조(합숙소의 설치 및 운영방법) ① 시장은 선수단의 기량향상과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합숙소의 설치·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훈련장 인근 설치 원칙
2. 조리사 배치 및 인건비 예산 지원
3. 예산 범위 내 운영비(숙소관리비, 비품·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지원
4. 합숙소 이용의 강제 금지
5. 훈련 외 시간 사생활 보호
6. 휴식권·사생활 보장, 관련 법령 준수(「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전문개정 2025·11·7]

제23조의2(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 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7]

제4장 신분보장

제24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25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6조(직권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처리 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단원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휴직) 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8조(정년) ① 단원의 임용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 60세
2. 코치 : 57세

3. 선수 : 40세

② 단원은 임용정년에 도달한 그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제29조(단원면직) ① 단원이 원에 따라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5장 상벌

제30조(포상금 등) 시장은 단원이 올림픽 및 각종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징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3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1개월간 보수의 5분의 1을 감한다.

⑤ 징계에 따라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부칙 <2019·12·13 규칙 제66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최초임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남은 단원의 봉급은 해당 계약 종료일까지 호봉제를 적용한다.

부칙 <2021·9·28 규칙 제7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1 규칙 제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3 규칙 제7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7·1 규칙 제7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11·7 규칙 제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11·7〉

등급 산정 기준(제7조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지도자(감독, 코치) 기준

등 급	지 도 자
S급	1급 경기지도자 자격 국가대표 지도자 경력 및 국가대표 선수 출신자
A	2급 경기지도자 자격 국가대표 지도자 경력 및 국가대표 선수 출신자
B	2급 경기지도자 자격 최근 3년 간 전국체전 우승지도 경험자
C	2급 경기지도자 자격 최근 3년 간 전국체전 준우승 및 전국규모대회 우승지도 경험자
D	2급 경기지도자 자격 지도자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선수경력 5년 이상인 자

2. 선수 기준

등 급	선 수
S급	최근 2년 이내 국가대표 선수로 올림픽 출전자 또는 아시안게임 입상자,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입상자
A	최근 2년 이내 전국체전 입상자 또는 기타 전국 규모대회 2회 이상 1위 입상자, 기타 국제대회 입상자
B	최근 3년 이내 전국 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C	최근 3년 이내 전국 규모대회 8강 진출자
D	최근 3년 이내 전국 규모대회 16강 진출자

[별표 2] 〈개정 2022. 12. 21〉

등급별 연봉표(제9조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지도자 연봉 기준표

구 분		지도자 연봉액 기준표(단위: 천원)				
		S급	A급	B급	C급	D급
지도자	감독	60,000 이상	54,000~ 60,000	48,000~ 54,000	42,000~ 48,000	42,000 이하
	코치	52,000~ 59,000	45,000~ 52,000	40,000~ 45,000	35,000~ 40,000	35,000 이하

2. 선수 연봉 기준표

구 분		선수단 연봉액 기준표(단위: 천원)				
		S급	A급	B급	C급	D급
선수		55,000 이상	49,000~ 55,000	40,000~ 49,000	31,000 ~ 40,000	31,000 미만

[별표 2의2] 〈개정 2025. 11. 7〉

단원 평가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정량평가 기준(대회성적)

구 분		1위(금)	2위(은)	3위(동)
국 제 대 회	세계선수권대회	50	45	40
	아시안게임	45	40	35
	아시아선수권	30	25	20
	기타국제대회	25	20	15
전 국 체 육 대 회		20	15	10
전 국 규 모 대 회		15	10	7
경 기 도 체 육 대 회		10	7	5

가.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50%만 가산한다.

나. 세계선수권대회는 4년을 기준으로 하고, 2년 주기는 50%, 1년 주기는 25%를 적용한다.

다. 전국규모대회란 대한체육회 또는 가맹협회 및 실업연맹에서 주관, 주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다만, 부상, 재활 등으로 연 4개 대회 이하 출전 시 50%를 가산한다.

라. 국제대회란 10개국 이상 출전대회를 말하며, 그 이하는 50%로만 적용한다.

마. 올림픽 출전자는 만점인 50점을 부여한다.

바. 국가대표 선발 시에는 20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사. 배드민턴 종목은 종목 특성상 기준점수의 40% 가산하여 배점을 부여하고, 대회 8강 진출 시 3점을 부여한다.

아. 배드민턴은 단체대항 리그전 출전 시 게임 1승당 1점을 부여한다.(전자기록지 제출)

자. 지도자의 경기실적 배점은 선수합계÷선수인원을 적용한다. 다만, 평가일이 해당한 연도 중 7월 이후에 입단한 선수는 제외한다.

차. 본 별표에 따른 정량평가 기준(대회성적)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점으로 한다.

2. 단위 평가표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평가표(총괄)										
평가대상자 정보		소속		종목			성명			
지도자평가확인		(서명)				부서평가확인		(서명)		
종합평가결과 내역										
구분	등급	총 점	정량평가		정성평가				비고	
			대회성적	성장성	지도자 평가	부서 평가				
배점기준	S급 ~D급	100	50	10	20	20				
최종평가										
1-1. 실적평가(대회성적 정량평가, 50점)										
최종평가결과(50점)										
구분		환산점수			입상기록					
경기실적										
1-2. 실적평가(성장성 정량평가, 10점)										
최종평가결과(10점)										
구분		환산점수			변화		당해연도 등급		전년도 등급	
평가등급					유지/상승/하락					
2. 직무수행능력평가										
구분	총 점	정성평가								비고
		잠재력	성장 가능성	성실성	팀발전 기여도	훈련참여 적극성	생활 태도	커뮤니 케이션	기관 기여도	
배점 기준	/40	5	5	2	2	2	2	2	20	
지도자 평가	/20									
부서 평가	/20									

[지도자 평가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평가표								
평가대상자 정보		소속		종목		성명		
직무수행능력평가								
지도자 평가점수(합계)			/20					
구분		배점	최종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미래 경쟁력 (10)	잠재력	5		5	4	3	2	1
		자기 운동 기술과 전문 체력의 장단점 파악과 보완의 정도						
	성장 가능성	5						
		선수 개개인의 실제 경기능력의 성장 및 발전기대도						
선수 가치 평가 (10)	성실성	2		2	1.6	1.2	0.8	0.4
	팀발전 기여도	2						
	훈련참여 적극성	2						
	생활태도	2						
	커뮤니 케이션	2						
총평 및 의견								

[부서 평가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평가표							
평가대상자 정보	소속		종목		성명		
기관기여도 정성평가							
기관 평가점수		/20					
구분	배점	최종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시정 기여도 (10)	10		10	8	6	4	2
	재능기부, 봉사활동, 홍보 언론보도, 시 행사 참여 정도						
팀발전 기여도 (10)	배점	최종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직장운동경기부의 성적향상 및 조직문화개선에 기여한 정도						
총평 및 의견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평가표(총괄)										
평가대상자 정보		소속 직위	종목		성명					
부서평가확인					(인)					
종합평가결과 내역										
구분	등급	총점	정량평가		정성평가			발전기여	비고	
			대회 성적	성장성	자격확인	지도자직무 부서평가				
배점기준	S급 ~ D급	100	50	10	유/무	30	10			
최종평가										
1-1. 정량평가결과(대회성적 50점)										
최종평가결과 (50점)										
구분		환산점수			입상기록					
경기실적										
1-2 실적평가(성장성 정량평가 10점)										
최종평가결과 (10점)										
구분		환산점수			변화		당해연도 등급		전년도 등급	
평가등급					유지/상승/하락					
2.직무수행능력평가										
구분	총점	정성평가								비고
		자격 유무	교육 수료	목표수립 달성	발전 기여도	리더십	지도 능력	훈련참여 적극성	커뮤니 케이션	
배점기준	40	유/무	5	5	10	5	5	5	5	
부서평가	/40									

[부서평가지]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평가표								
평가대상자		직위	종목		성명			
지도자 정성평가								
부서 평가점수			/40					
구 분		배점	최종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지도자 활동 (10)	교육수료	5		5	4	3	2	1
	지도자 개인의 폭력/성폭력 교육 등 직장 필수교육 이수 확인							
	목표수립 달성	5						
	연초 직장운동경기부 계획 목표 대비 달성 목표 수립 및 달성도 직장운동경기부의 대외 출전, 대외활동 적극성 등 평가							
발전 기여도 (10)	조직 발전 기여도	5						
	조직문화 개선/훈련/성과달성 기여도 및 대회 활동, 홍보 등을 통해 직장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브랜드 강화 및 발전을 위한 활동기여도 평가							
	팀 발전 기여도	5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문화개선 및 이미지 홍보/개선 등에 기여한 정도와 문제 발생 방지 혹은 적절한 대처, 조직관리,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종합평가							
지도자 역량 평가 (20)	리더십	5						
	팀과 선수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자가 행한 조직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							
	지도능력	5						
	해당 종목에 대해 선수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역량에 대한 평가 운동기술·체력·경기기술·자기관리 등에 대한 지도 능력의 전문성 평가							
	훈련참여 적극성	5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정한 훈련일정 참여 및 훈련에 대한 집중도/성실성 평가							
	커뮤니 케이션	5						
	직장운동경기부 내, 지도자와 선수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통역량 및 성과에 대한 평가, 선수 의견 참조							
총평 및 의견								

실적평가 - 직장운동경기부 성장성평가(10)				분 류 기 준						
전년도 점수		당해연도 점수		전년도 선수별 대회성적평가 점수기준 점수구간에 따라 대회성적등급을 산출하고 등급-상승-하락에 따라 팀 성장성 배점점수 부여 (지도자는 당해연도 소속선수평균점수 기준)						
대회성적 등급표	대회성적 점수구간	대회성적 등급표	대회성적 점수구간	구분		당해연도 등급				
						S	A	B	C	D
S	40점이상	S	40점이상	전 년 도 등 급	S	10	9	8	7	6
A	30~39점	A	30~39점		A	10	9	8	7	6
B	20~29점	B	20~29점		B	10	9	8	7	6
C	10~19점	C	10~19점		C	10	10	8	7	6
D	0~9점	D	0~9점		D	10	10	9	7	6

[별표 2의3] 〈개정 2025. 11. 7〉

단원 평가에 따른 연봉 조정 기준(제9조제2항 관련)

평가 등급	연봉 인상률
S급	10%
A급	7%
B급	5%
C급	동결
D급	5% 삭감

[별표 3] 〈개정 2023·12·13〉

대회출전비 및 훈련비 지급기준

(제18조 및 제20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숙 박 비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 여비기준	1박당
일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운 임		공용차량 사용 원칙, 부득이한 경우만 운임 지급
대회참가비	실 비 기 준	대회당
연습장사용료	실 비 기 준	선수 훈련용 체육시설

[별표 4] 〈개정 2021·9·28〉

피복지급

(제21조 관련)

구 분	품 명	연간 1인 지급기준	비고
의 복 류	경 기 복	3회	
	훈 련 복	3회	
	방한복(과카)	1회	
신 발 류	훈 련 용	4회	
	경 기 용	3회	
운동용품	기타 운동장비	예산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별표 5] 〈개정 2021. 9. 28〉

특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제30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금(1위)		은(2위)		동(3위)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올림픽			5,000		4,000		3,000
세계선수권대회			3,000		2,500		2,000
아시안게임			2,500		2,000		1,500
국제대회	국가대표출전		1,500		1,000		700
	오픈대회	5,000	1,000	3,000	700	2,000	500
전국체육대회		4,000	1,000	2,500	700	1,500	500
기타 전국대회		2,000	1,000	1,000	700	700	500

1. 단체전은 팀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2. 국제대회는 10개국이상 출전대회를 적용한다.
3. 세계선수권대회는 4년을 기준으로하고 2년 주기는 50% 1년 주기는 25%를 지급한다.
4. 지도자는 선수 중 가장 많은 지급액의 50%를 지급한다.
5. 단원이 동일대회에서 2종목 이상에서 입상하는 경우 포상금이 가장 많은 입상 성적은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각 50%를 지급한다.
6. 국가대표로 단체전 출전 시 개인 포상금을 지급한다.
7. 대회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8. 지도자는 대회 미 출전 시 포상금을 제외한다.

[별표 6]

단원의 징계 양정 기준

(제31조제2항 관련)

비위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복종의무 위반	파 면	정 직	정직-감봉	견 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 면	정 직	정 직	감봉-견책
청렴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별지 제1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제4조제1호 관련)

본인은 이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성 별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최종학력	20 년 월 일 학교(과 년) 졸업·입학		
경 력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종사		
주요경기 실 적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서

(제5조 관련)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임용에 있어 사용자인 이천시장과 피고용자인 는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당사자

가. 사 용 자 : 이천시장

나. 피고용자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종 목 :

2. 근로조건

가. 근로직종 :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나. 단원의 직책 : 감독, 코치, 선수

다. 보수

- 연봉 : 금

원(금

위)

※ 보수에는 연봉외 훈련수당, 직책수당, 특별수당 (국가대표선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고 기타 포상금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적용

3. 근로계약의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기타 조건

가. 피고용자인 선수 및 지도자는 붙임의 서약서에 서명날인 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계약기간 중에 고용 중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이천시장 (인)

근로자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제5조 관련)

본인은 이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등급 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 선수단의 정원 개 · 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된 때
7.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년 월 일

성 명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6조제1항 관련)

제 호

인 적 사 항	①성 명	(한글)		②생년월일	
		(한자)			
	③주 소				
재 직 사 항	④소 속	이천시청			
	⑤직위 · 직급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위촉직)			
	⑥기 간	20 . . . 부터 (년 개월) 20 . . . 까지			
⑦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20 . . .

이 천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6조제2항 관련)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 급	직 위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무년한			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 월 일	종 류	시행청	년월일	종류	처 분 청											
직위해제	년 월 일	사 유		처 분 청													
용 도																	
<table><tr><td colspan="2">원 본 대 조 필</td><td rowspan="4">원 인 (생년월일</td><td rowspan="4">(인)</td><td rowspan="4">년 월 일</td></tr><tr><td>직 명</td><td></td></tr><tr><td>성 명</td><td></td></tr><tr><td>인</td><td></td></tr></table>							원 본 대 조 필		원 인 (생년월일	(인)	년 월 일	직 명		성 명		인	
원 본 대 조 필		원 인 (생년월일	(인)	년 월 일													
직 명																	
성 명																	
인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별지 제7호서식】

() **훈련 계획서**

(제 17조제2항 관련)

	감독	부장	부단장	단장
결 재			전결	

팀 명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	

훈련목표	
훈련내용	

기타사항	
------	--

작성일		작성자	직위 : 감독 성명 : (인)
-----	--	-----	------------------------

이천시청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훈련 결과보고서

(제 19조제2항 관련)

결 재	감독	부장	부단장	단장
			전결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명단			

훈련결과	
------	--

분석 및 문제점	
----------	--

향후대책	
------	--

작성일		작성자	직위 :감독 성명:	(인)
-----	--	-----	------------	-----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대회출전 계획서

(제9조제1항 관련)

결 재	감독	부장	부단장	단장
			전결	

팀 명			
대 회 명		주 최	
대회기간		주 관	
출전기 간		대회장소	
참가인원	○ 명 (불참 ○명)	비고 (불참사유)	

대회참가 세부사항	성 명	세부종목	예상성적	비고

기타사항	
------	--

작성일		작성자	직위 : 감독 성명 : (인)
-----	--	-----	------------------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대 회 참 가 결 과 보 고 서

(제 19조제2항 관련)

결 재	감독	부장	부단장	단장
			전결	

□ 대회개요

대 회 명							
대회기간			대회장소				
입상실적	입상인원		메달 획득	구분	금	은	동
				단체			
				개인			

□ 세부결과

성 명	구 분	결 과	비고

□ 분석 및 향후대책

○

○

작성일		작성자	직위 : 감독 성명 : (인)
-----	--	-----	--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장비(피복·물품) 구매요청서

(제21조제2항 관련)

팀명	
----	--

결 재	감독	부장	부단장
		전결	

품 목	규격 (제품번호)	수량	단위	단가	공급가액	비고
계						
구매사유 : -						

이천시장 귀하